

책임준공확약서

스마트편딩대부 주식회사 귀중

충남 아산시 음봉면 신휴리 372-2 번지 일대(이하“본건사업부지”) 상에 아산시 음봉면 신휴리 타운하우스 신축자금 (이하 “본건사업”)의 시공사로서, 본건 사업과 관련하여 당사는 대출약정에 따라 대주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을 확약합니다.

1. 당사는 천재지변, 내란, 전쟁 등 불가항력을 제외하고는 차주의부도, 파산, 회생 등의 사유 및 본건 사업의 인허가 또는 설계변경, 공사비 지급 여부 등 기타 불가항력 이외의 여하 한 사유에도 불구하고, 최초 대출실행일로부터 (8)개월 이내에 본 건 건축물을 관계 법령에 부합 하도록 완공(사용 승인을 득하고, 준공 필증을 교부 받는 것을 의미함) 할 것입니다.
2. 당사는 본건 건축물의 건설과 관련하여 건설에 투입 되는 당사의 피고용인, 하도급인 등의 선임, 감독 및 이로 인한 분규와 건설 장비 등의 도입 및 사용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들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부담 할 것입니다.
3. 당사는 본건 건축물의 완공 이전에 본건 건축물에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 하자 발생 이후 지체 없이 당사의 비용과 책임 하에 이를 보수 할 것이며, 만약 합리적인 기간 내 에 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당사는 대주 또는 대주가 지정한 자가 당사의 비용으로 위 하자를 보수 할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4. 당사는 본건 건축물의 시공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분진 등의 환경 문제, 안전 사고와 본 건 건축물의 시공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인근 시설 및 주민을 포함한 제 3 자에 대한 인적, 물적 피해 및 손실 기타 제반 민원(시공과 관련된 민원을 의미함)에 따른 일체의 사항들을 당사의 전적인 책임 하에 처리 할 것입니다.
5. 당사는 본 책임준공 확약서의 내용을 위반 할 경우, 당사의 귀책 사유와 무관하게 여신 거래 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채무 인수 의무를 부담하겠습니다.
6. 본 책임준공 확약서에 달리 규정되지 아니 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출 약정에서 정한 바에 따르기로 합니다.

2017년 12월 26일

책임준공확약인

주식회사 가희종합개발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동탄기흥로 257번길 13, 1층

대표이사



시행권, 시공권 및 유치권 포기각서

2017년 [12]월 [26]일

스마트펀딩대부 주식회사 귀중

스마트펀딩대부 주식회사(이하 “대주”)와 주식회사 가희종합개발(이하 “차주” 또는 “시행사 겸 시공사”), 사이에 체결된 2017년 [12]월 [26]일자 「충남 아산시 음봉면 신휴리 372-2 번지 일대 타운하우스 신축자금 여신거래계약서」와 관련하여, 차주는 충남 아산시 음봉면 신휴리 372-2 번지 일대 타운하우스 신축자금 (이하 “본건 사업”)의 시행사 겸 시공사로서 귀사에게 다음 사항들을 확약하고 보증합니다.

차주는, 향후 본건 사업 수행 중 차주에게 여신거래계약서에서 정한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하여 본건 사업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대주가 판단하여 대주가 당사에게 시행권 및 시공권의 상실을 서면 통지하는 경우, 별도의 약정 없이도 차주의 본건 건물에 대한 시행권, 시공권, 기타 본건 사업의 시행사 및 시공사로서 가지는 일체의 권리나 계약상 지위를 포기하고, 그 권리 및 계약상 지위를 대주나 대주가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며, 대주나 대주가 지정한 자가 직접 또는 본건 사업의 대체 시공회사를 새로이 선정하여 본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 유치권을 포기(하도급업체의 유치권 포기에 대한 협조 포함)하고 시공현장을 즉시 명도하는 등 이에 적극 협력할 것이며, 이에 관하여 유치권의 주장, 민·형사상의 이익, 소제기 기타 일체의 민원 등을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본 각서에 따라 시공권을 양도하기 전까지 발생된 것으로서 차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에 대하여는 여신거래계약서 상의 피담보채무가 전부 해소(대출원리금의 전액 변제에 따른 대주의 의무가 전부 소멸)된 이후에 차주와 별도 정산하여 지급받을 것입니다.

여신거래계약서에 따른 대출원리금 상환채무가 잔존하는 한, 차주는 어떠한 경우에도 본건 공사의 기성부분(건축중인 건축물 포함)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일체의 권한행사(가압류, 가처분, 유치권 및 저당권설정청구권의 행사를

포함하되 이에 한하지 아니한다)를 하지 아니합니다.

차주의 확인사항

- 가. 차주는 적법하게 설립된 주식회사 가희종합개발 회사로서 이 포기각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이사회결의 등 회사의 내부절차를 취하였고 이 포기각서는 유효하게 차주를 구속한다.
- 나. 이 포기각서의 작성, 체결 및 이행은 차주가 체결하였거나 차주에게 구속력을 가지는 기존의 계약 또는 약정에 저촉되지 아니한다.
- 다. 차주는 차주가 당사자이거나 차주에게 구속력이 있는 모든 약정상, 차주의 영업, 재산 또는 재정상태에 중대하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채무불이행상태에 있지 아니하다.
- 라. 차주의 영업활동 또는 재무상태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가져올 수 있는 소송이나 행정심판 또는 중재가 계속되어 있지 않으며, 차주가 인지하는 한 이러한 법적 절차가 개시될 우려도 없다.
- 마. 이 포기각서와 관련하여 차주가 대주에게 제시한 차주에 관한 모든 정보는 중요한 점에서 완전하고 정확하다.

이 포기각서의 작성, 체결 및 이행은 관련법령, 차주의 정관 및 기타 내부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합니다. 향후 본 포기각서의 이행과 관련하여 향후 차주가 소속된 주식회사 가희종합개발 이사회 결의 기타 회사내부의 절차 등이 추가로 필요하게 되는 경우 차주는 지체 없이 동 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할 것입니다.

2017년 [12]월 06일

(포기인) 시행사 겸 시공사 :

주식회사 가희종합개발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동탄기흥로 257번길 13, 1층

주식회사 가희종합개발

